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9.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6월 27일, 정부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 8.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2024. 8. 28.)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 9. 5)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 부)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전완희)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것을 “통보”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6조).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통보) —— 통보——————————.

나. 검토의견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함.[1]

1) 「체육시설법」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각종 시책의 수립을 위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전문·생활 체육시설 현황,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현황 등을 '보고' 하도록 하고 있음.[2)]

'보고'는 지자체가 어떠한 사항을 국가에 알린다는 측면에서 '통보'와 비슷하지만, '보고'는 사무의 절차부터 결과까지 전 과정을 모두 알리는 것이고 '통보'는 수행결과만을 알린다는 점에서, '통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큼.[3)]

또한, 각종 체육시설 관련 시책 수립을 위해 지자체장이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은 체육시설 및 체육시설업 현황 등 수치적 통계 정도이므로, 해당 사항에 관한 모든 과정을 '보고'할 필요성은 낮은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공공체육시설 및 등록·신고체육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제4조의7까지 같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8조(보고사항) ① 법 제36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현황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및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취소 현황
3. 법 제19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및 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취소 현황

② 법 제36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현황을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말까지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 관계 재정립 방안 연구 : 승인·협의·보고 등에 관한 법령 정비를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법제처, 2018.8., p.67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보고’ 절차를 ‘통보’ 절차로 간소화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보다 대등하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임오경)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소수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

9. 관련 위원회 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 타

없 음